

# 서울특별시마포구정보화촉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의안 번호	
----------	--

제안년월일 : 2008. 5. 22

제안자 : 행정건설위원장

## 1. 수정이유 및 주요내용

마포구정보화촉진협의회 위원 위촉에 관한 규정중 명문화할 필요성이 없는 부분을 삭제하고 일부 미흡한 자구등을 수정하고자 함.(안 제9조 제2항 제3호)

## 서울특별시마포구정보화촉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서울특별시마포구정보화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안 제5조의2제1항중 “서울특별시(이하 “시장” 이라 한다)과” 를 “서울특별시시장과” 로 하고, “서울특별시(이하 “시” 라 한다)” 를 “서울특별시” 로 한다.

안 제6조의2 제목중 “등에” 를 “등에 대한” 으로 하고, 동조제1호중 “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에 의한 수급권자, 소년소녀가장, 장애인 등 마포구민” 을 “마포구민 중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에 의한 수급권자, 소년소녀가장, 장애인등” 으로 한다.

안 제9조제2항제3호를 삭제 한다

안 제10조제1항중 “협의회 위원중 구 소속공무원인 임명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.” 를 “협의회 위원으로 임명된 구소속 공무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.” 로 하고, 동조제2항중 “남은 기간으로 한다. 다만, 구의원이 그 직위를 상실한 경우에는 그 직위를 상실한 날에 해촉된 것으로 본다.” 를 “남은 기간으로 한다” 로 한다.

안 제12조중 “다음 각 호의 1에” 를 “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” 로 한다.

안제20조제1항중 “다음 각 호의 경우 정보화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.” 를 “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정보화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.” 로 한다.

**서울특별시 마포구 정보화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**  
수정안 대비표

현 행	개정안	수정안
<p>&lt;신 설&gt;</p>	<p>제5조의2(지역정보화 촉진에 관한 정책 등의 조정) ①구청장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·추진에 있어 서울특별시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과 협의하여 서울특별시(이하 “시”라 한다) 지역정보화기본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.</p> <p>②구의 시행계획 중 시가 조정한 계획에 대하여는 이를 수정할 수 있다.</p>	<p>제5조의2(지역정보화 촉진에 관한 정책 등의 조정) ① ----- -----서울 특별시장과 -----서울특별시 -----.</p> <p>②(개정안과 같음)</p>
<p>&lt;신 설&gt;</p>	<p>제6조의2(저소득층 등에 전산장비 지원) 구청장은 정보격차 해소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유상 또는 무상으로 전산장비를 지원할 수 있다.</p> <p>1.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에 의한 수급권자, 소년소녀가장, 장애인 등 마포구민</p> <p>2. 노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사회복지시설</p> <p>3. 정보격차 해소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개인 및 단체</p>	<p>제6조의2(저소득층 등에 대한 전산장비 지원) (개정안과 같음)</p> <p>1. 마포구민 중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에 의한 수급권자, 소년소녀가장, 장애인 등</p> <p>2. ~ 3.(개정안과 같음)</p>

현행	개정안	수정안
<p>제9조(구성) ① (생략)</p> <p>②위원장은 <u>구청장이 되고, 부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며,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로 한다.</u></p> <p>1. <u>구소속 4급이상 공무원 및 업무관련 공무원</u></p> <p>2. <u>지역내 연구기관·기업체·대학·언론기관·금융기관 등 지역정보화 관련기관 및 단체의 정보화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자</u></p> <p>3. <u>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구의원</u></p> <p>4. <u>정부 및 유관기관의 정보통신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</u></p> <p>5.(생략)</p> <p>③<u>협의회에 간사 1인을 두되, 간사는 정보화를 총괄하는 전산정보과장이 된다.</u></p> <p>④<u>협회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정보화 촉진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로 정보화촉진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.</u></p> <p>⑤(생략)</p>	<p>제9조(구성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위원장은 <u>부구청장이 되고, 부위원장은 기획재정국장이 되며, ----- 각 호의 어느 하나-----</u></p> <p>-----</p> <p>1. <u>정보화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교수·교사·연구원</u></p> <p>2. <u>지역내 유관기관·민간기관·학계·언론계·산업체 등에 종사하는 자</u></p> <p>3. (현행과 같음)</p> <p>4. <u>정보통신업무 관련 공무원</u></p> <p>5.(현행과 같음)</p> <p>③-----</p> <p><u>전산정보과장-----</u></p> <p>④----- <u>효율적인 운영과 정보화관련 자문 및 기술평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역정보화, 인터넷, 정보시스템, 정보통신분야 등의 전문가로 구성된 기술자문단-----</u></p> <p>⑤(현행과 같음)</p>	<p>제9조(구성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(개정안과 같음)</p> <p>1. ~ 2 (개정안과 같음)</p> <p>3. 삭제</p> <p>4. ~ 5. (개정안과 같음)</p>

현 행	개정안	수정안
<p>제10조(임기) ①임명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보직의 구 재임기간으로 한다.</p> <p>②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, 보궐된 위촉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.</p> <p>제12조(위원의 해촉)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중에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.</p> <p>제20조(전산정보자료 등의 제공) ①구청장은 보유하고 있는 전산정보자료의 공동활용과 이용촉진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.</p>	<p>제10조(임기) ①협의회 위원중 구 소속공무원인 임명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.</p> <p>②----- ----- ----- 남은 기간으로 한다. 다만, 구의원이 그 직위를 상실한 경우에는 그 직위를 상실한 날에 해촉된 것으로 본다.</p> <p>제12조(위원의 해촉)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20조(정보화자료 등의 제공) ①----- 다음 각 호의 경우 정보화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.</p>	<p>제10조(임기) ①협의회 위원으로 임명된 구소속 공무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.</p> <p>②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, 보궐된 위촉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.</p> <p>제12조(위원의 해촉) -----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----- ----- -----</p> <p>제20조(정보화자료 등의 제공) ①-----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정보화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.</p>